

공정거래 방침 시스템 매뉴얼

■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구 분	팀 명 / 직 위	성 명	서 명	일 자
작 성 자	자율준수 관리자/ 관리팀 상무	김 성 우		2026. 03. 09
검 토 자	제재 위원/ 사업책임자	조 경 래		2026. 03. 09
승 인 자	대표이사	김 종 국		2026. 03. 09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천로7번길 63(회동동)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목차

제1장. 총칙	1
제1조. 공정거래 방침.....	1
제2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2
제3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조직.....	3
제4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4
제2장. 규범	5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규범.....	5
제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규범.....	6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규범.....	8
제3장. 교육	9
제8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9
제4장. 감독	9
제9조. 자율준수 내부감독 체계.....	9
제10조. 자율준수 감사 보고.....	10
제5장. 제재	10
제11조. 규범 위반 제재 규정.....	11
제6장. 제보	11
제12조. 상담 . 제보 접수시 처리절차.....	12
제13조. 제보자 보호.....	12
제6장. 문서	13
제14조. 문서관리체계 구축.....	13
(부칙). 시행일	14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제 1 장 총칙

제1조. 공정거래 방침

공정거래 방침

(주)대하정보기술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 관계자와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에 발맞춰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방침을 선포한다.

1.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더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를 받아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운영을 강화한다.
2. 모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PC)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고 개선 사항을 반영한 편람을 전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열람 가능토록 공시한다.
4. 전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공정거래법 및 자사 공정거래방침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시 대표이사 직속 징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엄정히 처벌한다.

(주)대하정보기술은 본 공정거래방침을 사내외에 공표하고, 모든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거래 위반하지 않도록 다짐한다.

2026년 02월 05일

(주)대하정보기술 대표 이사 : 김 종 국 (인)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제2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2026년 03월 05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내역

- 성 명 : 김 성 우
- 생 년 월 일 : 1966년 09월 16일
- 자 격 : ㈜대하정보기술 상임감사
- 선 임 일 자 : 2026년 03월 09일
- 임명 공지일 : 2026년 03월 09일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수행 업무 내역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책임
- 공정거래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및 실천 운영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계획, 운영, 교육, 예산집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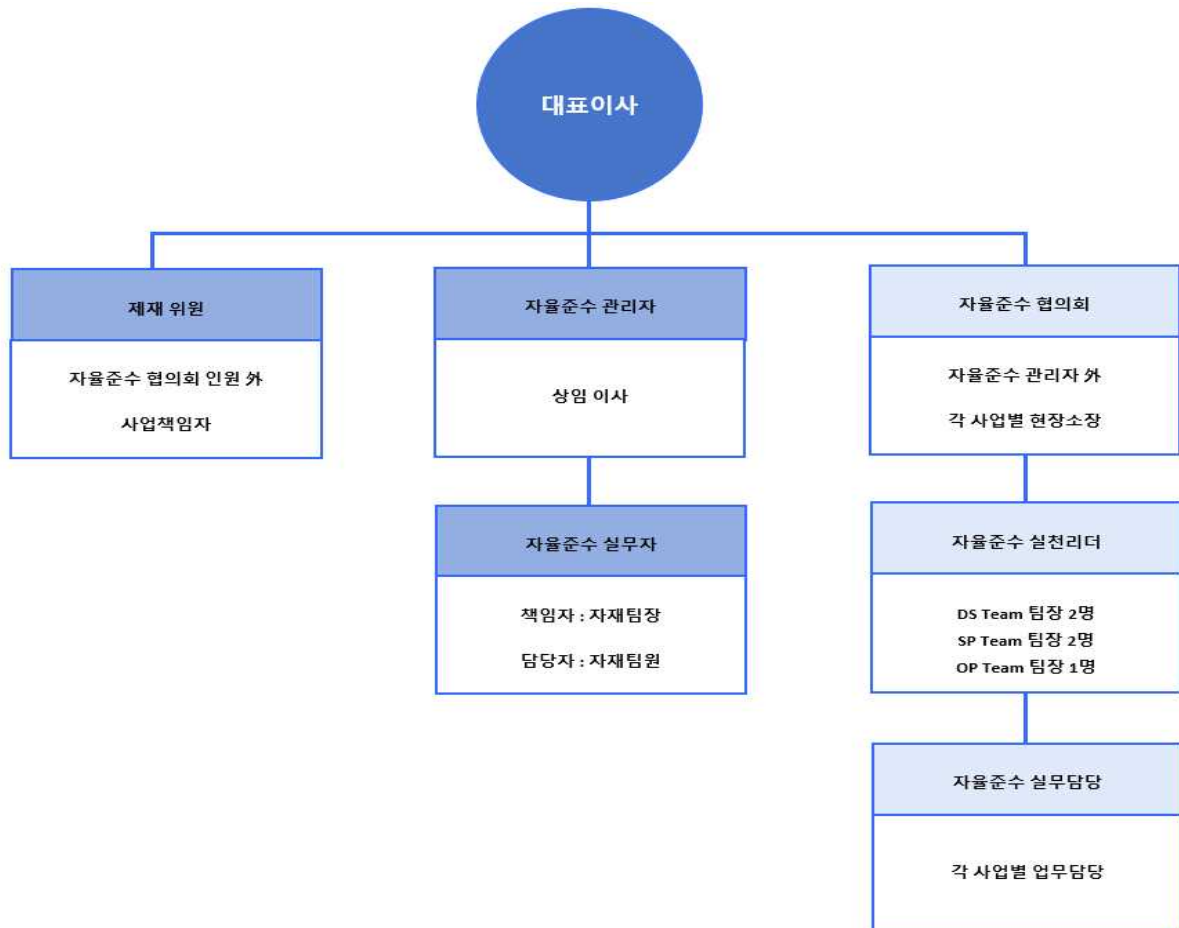
2026년 03월 05일

㈜대하정보기술

대표 이사 : 김 중 국 (인)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제3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조직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제4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나는 당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관련 규범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자율준수 편람을 숙지하고,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와 부당한 행위의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규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재)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위탁 취소,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을 하지 않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지시, 승인, 방조 등을 하지 않으며,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익명)제보채널에 제보 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자율준수협의회 규범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관련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제 2 장 규범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규범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11.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2.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

15.사업자 또는 사업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16.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규범

1.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규범을 준수한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이후에 계약내역에 없는 공정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원수급자에게 발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다.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3.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제정)를 사용해야 한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지원 ·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5.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등을 위탁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원사업자는 위탁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10.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원사업자는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14.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누구든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규범

1.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4.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5. 사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

제8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 · 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 · 판매부서 등 그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독

제9조. 자율준수 내부감독 체계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임명 사실을 전체 공지 및 홈페이지 개시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2. 자율준수 운영 조직 구성은 자율준수 관리자 1명, 제재 위원 1명, 자율준수 실무자 2명, 자율준수 협의회 2명(자율준수 관리자 외), 자율준수 실천리더 4명, 자율준수 실무담당으로 구성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된다.

3.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업무 협의 및 시정권고, 공정거래 관련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기타 자율준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구성(위원장 : 자율준수 관리자, 제재위원, 자율준수 협의회, 자율준수 실천리더 3명 이상)하고,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결과를 확정한다.

제10조. 자율준수 감사 보고

1.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나 조사를 통보 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내부감사 심의 필요시 사전에 심의일자를 공지하고, 심의 의결 사항을 문서화 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결과를 전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경쟁법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 협의 및 위험성평가 실시, 모니터링,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 강구, 상벌심의위원 의뢰,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서약서 징구,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해야 하며, 이 모든 활동은 문서화 하여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 · 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제재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제11조. 규범위반 제재 규정

1. 공정거래 관련 규범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제3장. 포상 및 징계)에 따라 그 제재를 시행한다.

2. 공정거래 규범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징계해고는 임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나. 정직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정직 기간 중에는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 하나 출근하지 못하며 이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감봉은 1회의 사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의 반액, 수회의 사범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로 한다.

라.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마.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때는 가중하여 상위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 6 장 제보

제12조. 상담 · 제보 접수 시 처리절차

1. 전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 위반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율준수 관리자는 상담 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저거래 위반관련 상담 · 제보 · 신고된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제보 · 신고 채널은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상담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사내 비취된 「신고함」 또는 자사 홈페이지 「윤리규범 및 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제보 가능하다.

4. 신고 내역 처리 결과 공정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10조. 규범위반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준다.

5. 제보자는 사규에서 정하는 포상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제보자 보호

1. 회사는 상담 · 제보 · 신고자 · 조사 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내용은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상담· 신고 등 정당한 제보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 한다.

2. 상담 · 신고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보복 등이 발생한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알려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고,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제보자 보호정책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상담 · 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 · 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4. 제보자가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고, 실명제보일 경우라도 신고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5. 제보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제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보자가 제보를 함으로써 어떤 형태로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든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서면으로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구제를 소명할 수 있고,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하여 졌다면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시정 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 7 장 문서

제14조. 문서관리 체계 구축

1.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은 체계적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관련 규범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 · 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규범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및 참석자명단은 보관하여야 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방침 및 세부규정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전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방침.매뉴얼 Fair trade Management Manual	문서번호	DHIT-FT-100
		제정일자	2022. 07. 20
		개정일자	2026. 03. 09
		개정번호	Rev. 3.0

(부칙)

1. 시행일

본 공정거래 방침은 2022년 07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공정거래 방침은 2023년 08월 30일에 부분 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공정거래 방침은 2026년 03월 09일에 부분 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